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0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 7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상개발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제8항, 제12항,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제12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0항, 제11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7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를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7항, 제9항, 제10항, 제8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68”을 “869”로 하고, 일반직 계 “858”을 “859”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70”을 “871”로 하고, 일반직 계 “860”을 “86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1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20”을 “17”로 하며, 일반직계 “20”을 “17”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9”를 “7”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을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제1항 관련)

1. 보건복지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	5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4년 3월 31일까지
4)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4년 3월 31일까지
5)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5명 (4급1, 5급2, 6급1, 7급1)	2024년 3월 31일까지
6) 보건의료정책실 혈액장기정책과	3명 (4급1, 5급1, 7급1)	2024년 3월 31일까지
7) 건강정책국 정신건강관리과	4명 (4급1, 5급1, 6급1, 7급1)	2024년 3월 31일까지
8)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9명 (4급1, 5급5, 6급2, 7급1)	2024년 3월 31일까지
9) 보건산업정책국 재생의료정책과	6명 (4급1, 5급2, 6급1, 7급2)	2024년 3월 31일까지
10)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3명 (4급1, 5급1, 6급1)	2023년12월31일까지

2.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국립소록도병원)	6명 (8급 6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국립소록도병원)	6명 (8급 6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국립소록도병원)	4명 (8급 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⑤ (생 략) ⑥ 기획조정실에 <u>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u> 을 두며,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생 략) ⑨ (생 략) ⑩ (생 략) ⑪ · ⑫ (생 략) ⑬ · ⑭ (생 략) ⑮ (생 략) ⑯ · ⑰ (생 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보건복지상담센터</u> ----- ----- ----- ----- <u>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상개발담당관 및 정보보호팀</u> ----- ----- ----- ----- -----. ⑬ (현행 제8항과 같음) ⑯ (현행 제9항과 같음) ⑦ (현행 제10항과 같음) ⑩ · ⑪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⑧ · ⑨ (현행 제13항 및 제14항과 같음) ⑫ (현행 제15항과 같음) ⑭ · ⑮ (현행 제16항 및 제17항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② (생략)	과 같음)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u>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및 재생의료정책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 -----.
⑤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u>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u> ----- ----- ----- -----.
1. ~ 10. (생략)	⑤ ----- -----.
<신설>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u>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u>
13. ~ 15. 삭제	12. <u>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u> 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16. ~ 22. (생략)	16. ~ 22. (현행과 같음)

⑥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 15. (생략)

⑦·⑧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⑪ (생략)

제39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

⑦ -----
-----.

<삭 제>

<삭 제>

3. ~ 15.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⑥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39조(한시정원)

<삭 제>

<u>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③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868</u>	• <u>869</u>	+1
•	•	•	
•	•	•	
일반직 계	<u>858</u>	<u>859</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 무관	1		
<u>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u> <u>또는 방재안전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870</u>	• <u>871</u>	+1
•	•	•	
•	•	•	
일반직 계	<u>860</u>	<u>861</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 무관	1		
<u>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